政治非理및腐敗行爲 搜査結果 戒嚴司발표

1、搜査經緯및動機

지난 7월18일 연행후 구속한 조사를 받은 이들 17명의 前國保委員및 前政治人 사무가 되어야할 지도층 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지위를 이용, 부패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 이들 17명의 정치적 비리및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가기강의 확립을 위한 정치풍토의 개선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2、搜査重點 方向

이들 17명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被嚴司搜査當局은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갖게 된 정치적 부패행위 ○기타 指導的 사회인사로서 국가관과 시대적 사명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3、非理및 腐敗行爲 類型

가 金品收受 ▲國會議員選擧 등 政治的行事를 앞두고 있는 企業人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품을 강요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등 非正常的인 政治資金 수수 ▲公企業체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특혜융자및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의 임원인사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인사를 단행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

나 國家紀綱紊亂 社會紀綱紊亂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다 非理및 腐敗行爲 類型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라 國家安保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마 國家紀綱紊亂 社會紀綱紊亂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바 國家安保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사 國家紀綱紊亂 社會紀綱紊亂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아 國家安保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 國家紀綱紊亂 社會紀綱紊亂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차 國家安保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카 國家紀綱紊亂 社會紀綱紊亂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타 國家安保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파 國家紀綱紊亂 社會紀綱紊亂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하 國家安保 ▲政治風土를 오염시키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킨 행위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여 1억원이상의 특별수사 ▲또한 이들이 수수한 금품은 1억원이상 5천만원이하 3명 ▲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3명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6명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17명 ▲1천만원이하 3명 등 모두 32명이다.

4、處罰方針

○이상과 같은 이들 대상자들의 비리및 부패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斯財金品 등 범죄행위에 해당되나 앞서 적용되는 법률은 형사법이 아닌 행정법이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새 시대의 국적있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들 대상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으로 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個人別非理·腐敗行爲

具滋春〈49·전서울市長 內務部長官〉

○利權介入 ▲1977년12월~1978년12월간 서울市長在職時 L호텔 S社長으로부터 호텔건축허가신축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원(1978년11월 1천만원, 1978년12월 1천만원)을 수수하고 또 1978년11월 1천만원(현가환산 3천6백57만원)을 D社長으로부터 2회에 걸쳐 2천46만원(현가환산 2천2백만원)을 수수하는 등 재임중 총 4회에 걸쳐 4천만원(현가환산 5천4백83만원)을 수수하고 ▲1976년12월~1978년11월간 서울市長在職時 K호텔 S社長으로부터 호텔건축허가신축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원(현가환산 1천11만원)을 수수하고 ▲1976년12월~1978년11월간 世宗文化財團 건축을 명목으로 D社長으로부터 2회에 걸쳐 2천46만원(현가환산 2천2백만원)을 수수하는 등 재임중 총 4회에 걸쳐 4천만원(현가환산 5천4백83만원)을 수수하고 ▲1962년12월~1963년9월간 金龍泰 忠南道警察局長 在職時 大田市內 酒工人組合長으로부터 協助費名目 金品收受